

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

청 구 인 ○ ○ (주민등록번호)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○○동)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사건본인과의 관계

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

청 구 취 지

- 1.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.
- 2.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○○○(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주소: 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)를 선임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청구인은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 따라,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.
- 2. 그런데, 이번에 청구인은를 하게 되었습니다.(미성년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을 적시)
- 3. 따라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

합니다.



4. 한편,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는 ○○○를 추천합니다.

	성명	
미성년	주소	
후견인	주민등록번호	
후보자	직업	
	사건본인과의 관계	

5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하고,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○○○를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첨부서류

1.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, 후견인후보자)	각 1통
2. 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, 후견인후보자)	각 1통
3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	1통
4. 기타(소명자료)	○통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ㅇㅇㅇ (인)

				rww.klac.or.k		
제출법원	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					
청구권자	미성년후견인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39조, 가사소송법 제	44조		
불복절차 및 기간	 ・미성년후견인사임허가심판청구의 경우,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대하여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, 가사소규칙 제27조, 민법 제939조) ・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의 경우, 미성년자, 미성년자의 부모와족, 이해관계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(가사소송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67조) ・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지를 받은 날부터,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(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)이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(가사소송법 제43조, 가사송규칙 제31조) 					
비 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			
후 견 인 결격사유	민법 제937조					

※ 후견인의 결격사유 (민법 제937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- 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- 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- 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- 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- 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